

출판부 운영 규정

제정 : 2017. 07. 07.

담당자 : 도서관 (02-950-5450)

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명칭)	제2조(목적)	제3조(업무)	제4조(조직)
제5조(출판부운영위원회)	제6조(재정 및 회계)	제7조(배포 및 판매업무)	제8조(출판권)
제9조(출판계약)	제10조(인세)	제11조(재고도서 폐기)	제12조(세칙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출판부는 한국성서대학교 부속 출판부(이하 “출판부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출판부는 학술연구 도서의 출판을 통해 대학의 학문과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업무) 본 출판부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- ① 본교의 교재 출판
- ② 본교 간행물 출판
- ③ 기타 일반도서의 출판
- ④ 출판도서의 판매 및 보급
- ⑤ 기타 출판 업무에 부수되는 사업

제2장 조 직

제4조(조직) 본 출판부는 총장이 임명한 출판부장이 운영한다.

제5조(출판부운영위원회) ① 출판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, 심의하기 위하여 출판부위원회(이하 위원회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출판부장과 운영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출판부장이 된다.

③ 운영위원은 출판부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되, 교무처장, 도서관장, 교목실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.

-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.
-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⑦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
1. 사업계획안과 예산안
 2. 사업결과 보고안과 결산안
 3. 출판물의 선정·체제·부수 발행 및 배포
 4. 출판물의 가격 및 인세지급
 5. 저자와의 출판계약 및 명의사용
 6. 학술도서 간행 조성비 및 교재 연구비의 지급
 7. 출판부 규정류의 제정 및 개폐안
 8. 기타 출판부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3장 출 판

제6조(재정 및 회계) 본 출판부의 재정 및 회계는 본교 예산, 회계규정에 따른다.

제7조(배포 및 판매업무) 본 출판부에서 간행하는 출판물 중 비매품은 출판부에서 직접배포 또는 도서관에 위임하여 배포한다.

제8조(출판권) 본 출판부의 출판물에 대한 출판권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9조(출판계약) 편,저자와의 출판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출판부장이 된다.

제10조(인세) 출판부에서 간행하는 도서에 대한 인세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4장 기 타

제11조(재고도서 폐기) 재고도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폐기한다.

- ①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으며, 판매량이 저조한 도서
- ② 개정판 및 증보판의 발행에 따라 판매가 불가능한 구판도서
- ③ 파손등으로 훼손되어 판매할 수 없는 도서
- ④ 기타 출판부장이 판단하여 폐기 할 필요가 있는 도서

제12조(세척) 본 규정에 의한 시행 세척은 출판부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07월 07일부터 시행한다.